

(앞쪽)

[] 임목벌채

[] 임산물 굴취·채취

허가증

성명				생년월일		
주소				전화번호		
산림소재지						
구역면적	㎡			벌채 또는 굴취·채취면적	㎡	
허가내용	종류	방법	용도	허가수량		잔존면적·분수·군상수
				수종	수량(㎡,본,kg)	
허가기간						

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, 제45조제2항 또는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
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

직인

유의사항
1. 위 허가에 따라 허가대상 임목을 벌채한 경우에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벌채지에 조림을 해야 합니다.
2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임목벌채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3. 수집된 임목 부산물을 보관할 경우에는 주변의 사람이나 시설 등에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하게 적치·보관하고, 특히 임지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토사유출 방지 및 산림작업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정리·보관해야 합니다.
4. 수집된 임목 부산물이 보관장소나 사용장소 외에 방치된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작성방법
1. “허가수량” 란에는 벌채의 경우에는 부피(㎡)와 분수를, 굴취·채취의 경우에는 분수 또는 무게(kg)를 적습니다.
2. “잔존면적·분수·군상수” 란에는 모수작업의 경우에는 모수분수를, 친환경 벌채의 경우에는 잔존면적과 군상수를 적습니다.

(뒤쪽)

변경 사항

[illegible]